

제1919호

고양시보

2022년 10월 18일(화)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47호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2-33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
계획구역(T1,T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7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2-25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외 1개소] 사업 공사완료 공고 18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0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1147호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 중 “정기공연외에”를 “정기공연 외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임단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 등) ① 시장이 상임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2. “실적수당”이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경력수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에 대한 우대수당을 말한다.
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정액급식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상임단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촉 및 위촉기간”이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촉”이란 계약해지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거”를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단원에 대하여는”을 “시장은 단원에게”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00,000원 범위 안에서”를 “30만원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퇴직금) 단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12조 중 “규칙 시행에 관하여”를 “규칙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지급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팀장 성명	문화예술팀장 민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이정복 031-8075-3382

[별표 2]

시립예술단의 연봉액(제7조제1항 관련)

1. 간부단원 및 수석단원

(단위: 원)

합 창 단		소년소녀합창단	
구 분	연봉액	구 분	연봉액
상임지휘자	상한 68,200,000 하한 49,500,000	상임지휘자	상한 59,400,000 하한 33,000,000
부지휘자	상한 50,820,000 하한 33,000,000	반주자	상한 39,930,000 하한 22,000,000
반주자	상한 50,820,000 하한 27,500,000	사 무 국	
		구 분	연봉액
부반주자	상한 43,560,000 하한 24,200,000	사무국장 (합창단)	상한 55,660,000 하한 27,500,000
수석단원	상한 47,190,000 하한 25,300,000	사무국장 (소년소녀합창단)	상한 48,400,000 하한 25,300,000

2. 일반단원

(단위: 원)

구 분	등 급	구성률	연봉액
합 창 단 일반단원	A등급	상위 20% 이하	상한 44,770,000 하한 25,300,000
	B등급	상위 20% 초과 50% 이하	상한 42,350,000 하한 24,200,000
	C등급	상위 50% 초과 80% 이하	상한 41,140,000 하한 23,100,000
	D등급	상위 80% 초과	상한 38,720,000 하한 22,000,000
사무단원			상한 38,500,000 하한 25,300,000

상임단원의 경력수당(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등 급	경력기간	금액	경력환산 기준
1등급	1년 이상 3년 미만	20,000	【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2등급	3년 이상 5년 미만	40,000	
3등급	5년 이상 7년 미만	60,000	
4등급	7년 이상 9년 미만	80,000	
5등급	9년 이상 11년 미만	100,000	
6등급	11년 이상 13년 미만	120,000	
7등급	13년 이상 15년 미만	140,000	
8등급	15년 이상 17년 미만	160,000	
9등급	17년 이상 19년 미만	180,000	
10등급	19년 이상 21년 미만	200,000	
11등급	21년 이상 23년 미만	220,000	
12등급	23년 이상 25년 미만	240,000	
13등급	25년 이상 27년 미만	260,000	
14등급	27년 이상 29년 미만	280,000	
15등급	29년 이상	300,000	

『고양시립예술단원』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고양시와 근로자인 단원은 고양시립예술단원 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당사자)

가. 사용자 :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

나. 근로자(이하 “단원” 이라 한다)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업무

2. ○○○○○○○○ 업무

3. 그 밖에 고양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예술단의 업무 중 시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장소 및 시간) ① 단원의 근무장소는 고양어울림누리 내 고양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공연·연습이 진행되는 장소로 한다.

② 단원은 다음 표에 명시된 시간에 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 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 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③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5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 ○○○천원으로 하며, 퇴직금은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준용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실적수당과 경력수당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① 단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령,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단원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단원은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시의 업무내용, 기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단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단원은 그 밖에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단원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는 단원이 근로계약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는 정기평정 결과 단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단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고 양 시

대 표 자 : 고 양 시 장 (인)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연) ①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공연 및 특별공연을 갖는다. ② (생략) 제6조(상임단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은 연봉과 실적수당 및 경력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2. “실적수당”이라 함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경력수당”이라 함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에 대한 우대수당을 말한다. 4.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8조 규정의 위촉 및 위촉기간이라 함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조례 제12조 규정의 해촉이라 함은 “계약해지”를 말한다. ② 상임단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4조(공연) ① -----정기공연 외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단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 등) ① 시장이 상임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2. “실적수당”이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경력수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에 대한 우대수당을 말한다. 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정액급식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상임단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u>별표 2</u> 의 <u>규정에 의거</u> 지급하며 연봉 지급액 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⑤ (생 략) 제10조(여비 및 실비보상) ① <u>단원에 대</u> <u>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에 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300,000원 범 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u>이 경우 전형위원이</u> <u>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u> <u>다.</u> 제11조(퇴직금) <u>단원의 퇴직금에 관하여</u> <u>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u> <u>를 따른다.</u> 제12조(세부사항) 이 <u>규칙 시행에 관하</u> <u>여 필요한 사항은</u> 시장이 따로 정한 다.	다. 이 경우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 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촉 및 위촉기간” 이란 계약 및 계약기간 을 말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 촉” 이란 계약해지를 말한다. 제7조(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① -----별표 2에 <u>따라</u>----- -----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여비 및 실비보상) ① <u>시장은 단</u> <u>원에게</u>-----<u>범위에서</u>----- -----. ② ----- -----30만원 <u>범위에서</u>----- ----- ----- . <u><후단 삭제></u> 제11조(퇴직금) <u>단원의 퇴직금 제도에</u> <u>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u> <u>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u> 제12조(세부사항) -----<u>규칙의 시행에</u> ----- -----.
--	---

현행				개정			
[별표 2]				[별표 2]			
시립예술단의 연봉액				시립예술단의 연봉액(제7조제1항 관련)			
1. 간부단원 및 수석단원 (단위: 원)				1. 간부단원 및 수석단원 (단위: 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상임지휘자	상한 62,000,000 하한 45,000,000	상임지휘자	상한 54,000,000 하한 30,000,000	상임지휘자	상한 68,200,000 하한 49,500,000	상임지휘자	상한 59,400,000 하한 33,000,000
부지휘자	상한 46,200,000 하한 30,000,000	반주자	상한 36,300,000 하한 20,000,000	부지휘자	상한 50,820,000 하한 33,000,000	반주자	상한 39,930,000 하한 22,000,000
반주자	상한 46,200,000 하한 25,000,000	사무국		반주자	상한 50,820,000 하한 27,500,000	사무국	
부반주자	상한 39,600,000 하한 22,000,000	사무국장 (합창단)	상한 50,600,000 하한 25,000,000	부반주자	상한 43,560,000 하한 24,200,000	사무국장 (합창단)	상한 55,660,000 하한 27,500,000
수석단원	상한 42,900,000 하한 23,000,000	사무국장 (소년소녀합창단)	상한 44,000,000 하한 23,000,000	수석단원	상한 47,190,000 하한 25,300,000	사무국장 (소년소녀합창단)	상한 48,400,000 하한 25,300,000
2. 일반단원 (단위: 원)				2. 일반단원 (단위: 원)			
구분	등급	구성률	연봉액	구분	등급	구성률	연봉액
합창단 일반단원	A등급	상위 20% 이하	상한 40,700,000 하한 23,000,000	합창단 일반단원	A등급	상위 20% 이하	상한 44,770,000 하한 25,300,000
	B등급	상위 20% 초과 50% 이하	상한 38,500,000 하한 22,000,000		B등급	상위 20% 초과 50% 이하	상한 42,350,000 하한 24,200,000
	C등급	상위 50% 초과 80% 이하	상한 37,400,000 하한 21,000,000		C등급	상위 50% 초과 80% 이하	상한 41,140,000 하한 23,100,000
	D등급	상위 80% 초과	상한 35,200,000 하한 20,000,000		D등급	상위 80% 초과	상한 38,720,000 하한 22,000,000
사무단원			상한 35,000,000 하한 23,000,000	사무단원			상한 38,500,000 하한 25,300,000

[별표 3]

상임단원의 실적수당

(단위: 원)

(생 략)	지급기준
	1. (생 략) 2. 다만,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 행사 및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상임단원의 실적수당(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현행과 같음)	지급기준
	1. (현행과 같음)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3의2]

상임단원의 경력수당

(단위 : 원)

등 급	경력기간	금액	경력환산 기준
1등급	1년이상 3년미만	20,000	【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2등급	3년이상 5년미만	40,000	
3등급	5년이상 7년미만	60,000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경력
4등급	7년이상 9년미만	80,000	
5등급	9년이상 11년미만	100,000	<신 설>
6등급	11년이상 13년미만	120,000	
7등급	13년이상 15년미만	140,000	
8등급	15년이상 17년미만	160,000	
9등급	17년이상 19년미만	180,000	
10등급	19년이상 21년미만	200,000	
11등급	21년이상 23년미만	220,000	
12등급	23년이상 25년미만	240,000	
13등급	25년이상 27년미만	260,000	
14등급	27년이상 29년미만	280,000	
15등급	29년이상	300,000	

[별표 3의2]

상임단원의 경력수당(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등 급	경력기간	금액	경력환산 기준
1등급	1년 이상 3년 미만	20,000	【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2등급	3년 이상 5년 미만	40,000	
3등급	5년 이상 7년 미만	60,000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4등급	7년 이상 9년 미만	80,000	
5등급	9년 이상 11년 미만	100,000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6등급	11년 이상 13년 미만	120,000	
7등급	13년 이상 15년 미만	140,000	
8등급	15년 이상 17년 미만	160,000	
9등급	17년 이상 19년 미만	180,000	
10등급	19년 이상 21년 미만	200,000	
11등급	21년 이상 23년 미만	220,000	
12등급	23년 이상 25년 미만	240,000	
13등급	25년 이상 27년 미만	260,000	
14등급	27년 이상 29년 미만	280,000	
15등급	29년 이상	300,000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립예술단원』 위 축 계 약 서

고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고양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고양시립예술단원 위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가. 갑 : 고양시장

나. 을

- 1) 주 소 :
- 2) 성 명 :
- 3) 생년월일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가. 000000업무

나. 기타‘갑’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 ‘을’은 常勤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 및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립예술단원』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인 고양시와 근로자인 단원은 고양시립예술단원 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당사자)

가. 사용자 :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

나. 근로자(이하 “단원” 이라 한다)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업무
2. ○○○○○○ 업무
3. 그 밖에 고양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예술단의 업무 중 시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장소 및 시간) ① 단원의 근무장소는 고양어울림누리 내 고양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공연·연습이 진행되는 장소로

제5조(보수)

가. 계약금액

① 보수는 연봉 ○○○천원으로 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준용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로 균등 分割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6조(준수사항)

가. “을”은 근무하는 기간동안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기간동안중 알게된 “갑”의 업무내용, 기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 “을”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가. “갑”은 “을”이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의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기타 계약 조건)

가. “을”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을”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을”은 부단한 노력으로 고양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

한다.

② 단원은 다음 표에 명시된 시간에 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 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 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③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5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 ○○○천원으로 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준용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실적수당과 경력수당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① 단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령,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단원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단원은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시의 업무내용, 기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씩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고 양 시 장 (인)

을 : 성 명 (인)

④ 단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단원은 그 밖에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단원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는 단원이 근로계약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는 정기평정 결과 단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단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고 양 시

대 표 자 : 고 양 시 장 (인)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연봉액 및 수당, 근로계약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준하여 단원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시립예술단 연봉액의 상·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함(별표 2).
- 다.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 행사 시 상임단원에게 실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정비함(별표 3).
- 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2호서식).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 도시관리계획(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T1,T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T1,T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0. 18.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4	T1	교통처리	· 대로 2-1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대로 2-4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대로 2-1 기점부 차량 진·출입구 1개소 추가
14	T2	교통처리	· 대로 2-4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소로 2-1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대로 2-4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대로 2-5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 소로 2-1에서의 차량 진·출입 허용

7. 특별계획구역(T1,T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결정 : 변경

구분	계획 지침(내용)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구간설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치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름	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차량출입 허용구간 2개소 추가)
차량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외 1개소]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소로1-108호선(삼성당취락)]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외 1개소) 사업
- 명 칭 : 소로3-A호선, 소로1-108호선(삼성당취락)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A	6.0	국지 도로	87		토당동 661-1	소로1-108 토당동 662-17	일반 도로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금회시행	소로	3	A	6.0	국지 도로	87	835.5	토당동 661-1	소로1-108 토당동 662-17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1	108	10.0	집산 도로	645		대로2-9 토당동 817-13	대로2-9 토당동 808-8	일반 도로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금회시행	소로	1	108	2.5	집산 도로	22	46.2	토당동 650-9	토당동 6509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 명 : 고양시장(공사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0. 10. 6.
- 준공일 : 2022. 2. 28.

6. 관계도면 : “계재생략”